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제목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2.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 중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판례.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의미를 **형태의 일부 변경 여부가 아니라, 시각을 통한 미감 창출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경우라도, 그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고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디자인 창작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
-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등록무효는 **대상디자인의 공지·공연실시 여부와 무관함**을 명시적으로 판시함

(2) 사안개요

- 당사자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 사건 경과
 - 소외 1 회사는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발사업을 추진함
 - 소외 2 회사는 위 사업 과정에서 입체룰러 형태의 **대상디자인들을** 개발하여 소외 1 회사에 납품함
 - 이후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룰러를 전달하며 제작을 의뢰함
 - 원고는 이를 실측·도면화하여 일부 형태를 변경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등록함
 -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쟁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권리자 출원 판단에서 **대상디자인의 공지·공연실시 여부가 요구되는지 여부**

(3) 법리

① 쟁점이 된 법적 쟁점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무권리자 출원 판단기준**
-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경우, 그 변형이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권리자 출원 무효사유에서 **대상디자인의 비공지성 필요 여부**

②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

- 대상디자인들은 소외 2 회사 직원과 소외 1 회사 직원이 협의·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작됨
-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대상디자인에 관한 입체룰러를 실측하여 도면을 완성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
 - 양 끝 방향으로 2단의 단차가 형성된 구조
로서 대상디자인들과 공통된 외관을 가짐
- 차이점은
 - 단차 사이 경사도와 폭이 다소 완만·연장된 점
 - 측면 외피가 다소 두꺼워진 점에 불과함

③ 적용된 판단기준(법리 기준)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의미
 - 단순히 형태 변경을 가한 자가 아니라
 - **시각을 통한 미감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행위자**
-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경우
 - 그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인지
 -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 디자인 창작행위로 볼 수 없음
 - 출원인이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아닌 경우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함**
- 무권리자 출원 무효사유는
 -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함
 - 대상디자인의 공지·공연실시 여부와는 무관함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대상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원고는 대상디자인을 전달받아 일부 수정하여 출원하였을 뿐,
 -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이거나,
 -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고 등록무효사유가 인정됨**

(5) 대법원 판단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21조의 법리를 설시함
- 대상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한 것은
 -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
 -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러한 변형은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
- 대상디자인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함
- 원심 판단에는
 - 법리 오해,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음

(6)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

(7) 한줄 키워드 요약

- 타인의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로 변형하여 미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 창작행위로 볼 수 없어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가 된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 무권리자 출원 판단의 핵심은
'형태 변경의 유무'가 아니라 '미감 창출에 대한 실질적 기여'
- 무권리자 출원 무효사유는 **신규성·창작성·공지성** 판단과 독립적